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7호
개정	1998. 10. 17	규칙	제152호
	2005. 10. 5	규칙	제424호(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2006. 1. 11	의회규칙	제 3호
	2006. 10. 13	규칙	제515호(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007. 7. 1	규칙	제544호
	2010. 8. 2	규칙	제60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12. 2	규칙	제71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6. 4	의회규칙	제 21호
일부개정	2019. 12. 23	의회규칙	제 27호
일부개정	2022. 1. 6	의회규칙	제 3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기구와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제2조(전문위원)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두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7. 7. 1, 2010. 8. 2, 2018. 6. 25, 2022. 1. 6>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6. 10. 13]

제3조(정책지원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중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본조신설 2022. 1. 6]

제4조(업무)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별표와 같다.

[중전 제3조에서 이동 2022. 1.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규칙 제424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6. 1. 11 의회규칙 제3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3 규칙 제515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전문위원)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두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부칙 <2007. 7. 1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규칙 제60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전문위원)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두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부칙 <2013. 12. 2 규칙 제7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8. 6. 4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3 의회규칙 제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6 의회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2. 1. 6〉

구 분	담 당 사 무
의 정 팀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4.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의정동우회 및 각종 협의회 관리 6. 홈페이지 관리 및 의원등록사항 정리·관리
의 사 팀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8. 본회의 및 임시회의 각종 위원회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9.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0.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1.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사운영팀	12.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13.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인사위원회 운영 14. 근무성적평정 15. 징계제도 운영 16. 공무원 채용 17. 공무원의 호봉승급 및 연봉책정 18. 공로연수 파견대상자 결정 및 임면 19.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결정 20.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21. 후생복지제도 운영
의정기록팀	2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2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입법지원팀	24. 의회입법정책 등에 관한 장기·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의정에 관한 민원, 학술연구, 용역, 조사, 자문에 관한 사항 26.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27. 집행부 발의 안건 등에 대한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 28.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에 관한 사항 29.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30. 의회관련 쟁송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홍 보 팀	31.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32. 의회수첩 제작